

춘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3166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29.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2. 25. 선고 2020가소46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 무렵 분할 전 원주시 C 답 2,712.6㎡ 중 106/2,712.6 지분(약 32평) 및 D 답 2290.9㎡ 중 59.5/2290.9 지분(약 18평)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지분을 ‘원고의 토지분’이라 한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9.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3. 4. 4. 종결되었다.

다. 피고에 대하여 다시 2018. 2. 2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3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10. 5.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8. 11. 7. 종결되었다.

라. 한편 피고의 E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주현장 현장대리인 F는 2011년경 토취장 진입로로 사용하던 원주시 G 답의 소유자인 H에게 토취장 진입로 사용료 및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F와 원고의 토지분 사용료로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므로(제118조)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제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2012. 5. 10. 개시되고 2012. 9. 25.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3. 4. 4. 종결되었는데, 2018. 2. 27.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 사용료 채권은 그 주장 자체로 2012. 5. 10. 개시된 회생절차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위 사용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용료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이미 실권, 면책되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로써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현주, 판사 신흥호, 판사 장두봉